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나53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병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피항소인 C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1. 1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1가소10439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0. 2. 9. 00:15경 양주시 고읍로 117-7 편도 3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나누리공원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만송동 방향에서 고읍지구대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되었고, 피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중앙분리대(무단횡단방지펜스)를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중앙분리대 파손 수리비 9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E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950,000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20. 5. 18. “청구인(피고)의 책임비율 40%,

피청구인(원고)의 책임비율 60%”이라는 취지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하자 위 심의위원회는 2021. 1. 11. “청구인(피고)의 책임비율 60%,

피청구인(원고)의 책임비율 40%”이라는 취지의 재심의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2. 3. 손해액 950,000원의 40%인 38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속도를 위반한 피고 차량이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9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산정하여 지급한 구상금 중 원고의 과실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과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왕복 4차로(주머니 차로 제외)를, 원고 차량은 왕복 3차로(주머니 차로 제외)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우측 차로인 대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었다고 보인다(원고는 원고 차량이 선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CCTV동영상은 원고 진행 차로의 후방에서 촬영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20~40km/h 초과하여 직진을 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의 양 방향 모두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차량 모두 자신이 진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유사시 신속히 차량을 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발생을 피하거나 적어도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만연히 직진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감속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위와 동일한 과실 비율을 적용한 E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현, 판사 강영훈, 판사 노태현